

고성군 순환버스 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308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교통과장 장은창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읍 순환버스 민간위탁 기간이 2026. 6. 30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
- 고성읍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증대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위탁근거

- 1)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의2(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)
- 2)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

다. 위탁내용

○ 위탁개요

- 위탁 운영기간: 2026. 7. 1. ~ 2029. 6. 30.(3년)
- 위탁 운영비: 약 352,360천원 정도/1년(붙임1 참조)
- 위탁 방법: 공개 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(5월 중 공고 예정)

○ 위탁내용: 읍 순환버스 운영 및 관리

○ 운영현황: 2개노선으로 순환버스 2대 운행

구분	기 점	주요 경유지	종 점	운행수 횟수	비고
1노선 (1호차)	터미널	간이대합실 → 더조은병원 → 교육청 → 대동남산·주공 → 남산약국 → LH주공 → 중앙고 → 코아루 → CGV·탑마트	터미널	왕복회	6
	대동남산 주공	교육청 → 파머스 → 터미널 → 철성중 → 고성중 → 중앙고 → 남산공원 → 강병원	대동남산 주공	왕복회	4
2노선 (2호차)	터미널	터미널 → 간이대합실 → 더조은병원 → 월평·곡용 → 해수탕·신월 → 코아루·국도A → 수외마을·남산공원	터미널	왕복회	6
	터미널	터미널 → 새시장 → 강병원 → 남산공원·수외마을 → 중앙고·코아루 → 신월·해수탕 → 곡용·월평 → 울대	울대	왕복회	4

○ 운영형태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한정면허

라. 민간위탁금 산출내역

① 사업비 현황 : 금352,360천원 정도(민간위탁금)

② 민간위탁금(운영비)

구분	금액(원)	산출내역(원)	비고	
합계	352,360,600			
인건비	소계	305,265,600		
	급여	188,514,000	승무원(고성버스 승무원 동일) 5,236,500원×3명×12개월	상여금포함
		51,351,000	사무원(경력자) 4,279,250원×1명×12개월	
	퇴직충당금	18,000,000	승무원(3명) 6,000,000×3명	
		5,040,000	사무원(1명) 5,040,000×1명	
	연차수당	10,985,000	승무원(3명) 2,793,873×3명	
			사무원(1명) 2,603,380×1명	
	4대보험료	23,054,400	승무원 640,400×3명×12개월	
		6,721,200	사무원 560,100×1명×12개월	
	복지후생비	1,600,000	근로자의 날 선물 등 400,000×4명	

운 영 비	소 계	47,095,000	
	전기충전료	16,920,000	650,000×2대×12개월=15,600,000 전기관리대행료 110,000×12개월=1,320,000
	타 이 어	8,480,000	230,000×6개×3회×2대=8,280,000 수선인건비 200,000
	부 속 대	12,160,000	라이닝 55,000×8개×2회×2대+400000(수선 인건비)=2,160,000 기타부속 및 수선비 10,000,000
	차량보험료	4,935,000	대인 I 1,117,000×2대=2,234,000 대인 II 779,000×2대=1,558,000 대물 571,500×2대=1,143,000
	승무원 근무복	1,000,000	승무원 근무복 250,000×4명
	세무, 수수료 등	2,400,000	200,000×12월
	청소도구 외 잡비	1,200,000	100,000×12월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- 순환버스 운행은 고성읍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,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
- 특히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공공교통 서비스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만,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
 -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, 소요예산 검증 확보
 - 위탁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·점검 및 성과 관리, 정산 철저
 - 이용 수요 변화에 따른 노선 및 운영 효율성 검토 등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순환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